주요 노동동향

생산 및 물가 동향

◈ 2024년 2월 생산은 전월대비 1.3% 증가(전년동월대비 2.0% 증가)

○ 전산업 생산은 건설업에서 줄었으나, 광공업, 서비스업, 공공행정에서 늘어 전월대비 1.3%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로는 공공행정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생산이 늘어 2.0%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통신 · 방송장비, 담배 등에서 줄었으나, 반도체, 기계장비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3.4% 증가함(전년동월대비 5.1% 증가).

○ 서비스업 생산은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 임대 등에서 줄었으나, 숙박 · 음식점, 운수 · 창고 등에서 늘어 전월대비 0.7% 증가함(전년동월대비 1.2% 증가).

◈ 2024년 2월 소비는 전월대비 3.1% 감소,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10.3% 증가

○ 소매판매액지수는 의복 등 준내구재(2.4%)에서 판매가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4.8%), 통신기기 · 컴퓨터 등 내구재(-3.2%)에서 판매가 줄어 전월대비 3.1% 감소함(전년동월대비 0.9% 증가).

○ 설비투자는 선박 등 운송장비(23.8%) 및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6.0%)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대비 10.3% 증가함(전년동월대비 0.3% 감소).

○ 건설기성(불변)은 전월대비 1.9% 감소, 건설수주(경상)는 전월대비 16.6% 감소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기(월)대비, ( ) 안은 전년동월대비)

		연간			분기				분기				월		
		2021	2022	2023	2022				2023				2023	2024	
					1/4	2/4	3/4	4/4	1/4	2/4	3/4	4/4	2월	1월p	2월p
생산	전산업	5.4	4.6	1.0	1.2	1.2	0.3	-0.7	0.1	0.6	1.0	0.7	1.8	0.4(7.4)	1.3(2.0)
	광공업	8.5	1.0	-2.6	2.5	-2.2	-3.6	-4.8	0.4	2.6	1.3	2.2	-0.8	-1.5(12.9)	3.1(4.8)
	제조업	8.8	0.9	-2.6	2.3	-2.2	-3.7	-4.9	0.3	3.0	1.3	2.2	-0.7	-1.5(13.7)	3.4(5.1)
	건설업	-6.7	2.8	7.3	-1.5	1.5	1.5	4.3	2.8	1.1	1.1	-2.5	7.7	13.8(18.2)	-1.9(0.5)
	서비스업	5.0	7.0	3.2	0.6	3.3	1.6	0.3	1.0	0.0	1.0	0.3	2.2	-0.2(4.5)	0.7(1.2)
소비	소매재 판매	5.8	-0.3	-1.5	-0.9	-0.7	0.8	-1.5	0.6	-0.5	-1.9	0.4	4.0	1.0(-3.3)	-3.1(0.9)
투자	설비투자	9.6	3.3	-5.4	1.8	-1.5	9.6	-1.5	-8.0	1.0	-3.1	3.1	1.8	-5.9(3.8)	10.3(-0.3)
물가		2.5	5.1	3.6	1.6	1.9	1.1	0.4	1.1	0.6	1.0	0.7	0.2	0.5(3.1)	0.1(3.1)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B), 제조업(C),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D)을 포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 개정)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 및 창고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정보통신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업(L),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S), 수도 ·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E))를 포괄함.
3) 2022년 이후 전산업 연간수치는 농림어업을 제외한 수치임.
4) 물가상승률 월별 자료는 순서대로 2023년 3월, 2024년 2월, 2024년 3월 기준임.
5) p는 잠정치임.
6) 생산, 소비, 투자의 분기 및 월 수치는 계절조정계열 전기(월)대비, 연간 수치는 원계열 전년대비임.
7) ( ) 안은 원계열 전년동월대비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 2024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1% 상승(생활물가지수 전월대비 0.3% 상승)

○ 2024년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4(2020=100)로 전월대비 0.1% 상승함(전년동월대비 3.1%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월대비 음식 · 숙박(0.3%), 교통(0.3%), 식료품 · 비주류음료(0.2%), 가정용품 · 가사서비스(0.7%), 교육(0.3%), 보건(0.2%), 기타 상품 · 서비스(0.2%), 주류 · 담배(0.1%)는 상승, 의류 · 신발, 통신은 변동 없으며, 오락 · 문화(0.4%), 주택 · 수도 · 전기 · 연료(0.1%)는 하락함.
- 생활물가지수는 식품은 전월대비 0.4% 상승, 식품 이외는 전월대비 0.2% 상승하여 전월대비 0.3% 상승함.

◈ 2024년 2월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증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4% 증가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2p 상승함.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함.

[그림 1]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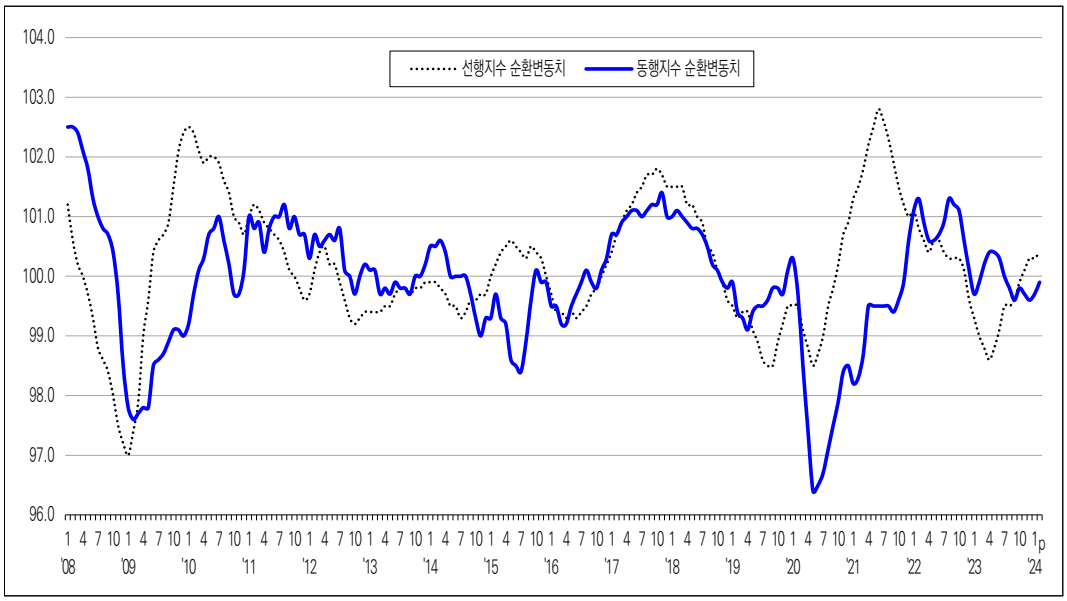

주 : 1) p는 잠정치임.
2) 경기선행지수 및 경기동행지수는 2020년=100이 기준.
자료 : 통계청, 『경기종합지수』, KOSIS.

(이기쁨,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

고용 동향

◈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증가폭 축소, 전월대비 취업자 감소 전환

○ 2024년 3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7만 3천 명 증가하였음(전월대비[1] 11만 9천 명 감소).

- (산업별) 3월 제조업은 기저 영향의 일부로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됨. 서비스업은 정보통신과 전문과학 취업자 증가가 지속되고 있으나, 보건사회복지와 공공행정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됨.
- (연령별) 전월대비 청년층에서 20대 초반 여성 위주로 고용이 부진함.
- (종사상 지위별) 전월대비 상용직 증가폭이 소폭 감소하였고, 전년동월대비 임시직 증가폭이 축소됨.
- (실업자) 전년동월대비 3월 실업자는 5만 2천 명 증가하였고 2월 대비 증가폭이 확대됨(2월 +2만 5천 명). 전월대비 보건사회와 공공행정, 건설업에서 실업자가 증가함. 구직단념자는 증가세가 둔화됨.
- (비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3월 비경제활동인구는 6만 2천 명 감소하여 지속적으로 감소폭이 줄어듦(2월 -18만 3천 명).

[그림 1] 원계열 취업자, 실업자, 비경활 증감 현황(상) 및 계절조정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중), 실업자(하) 변화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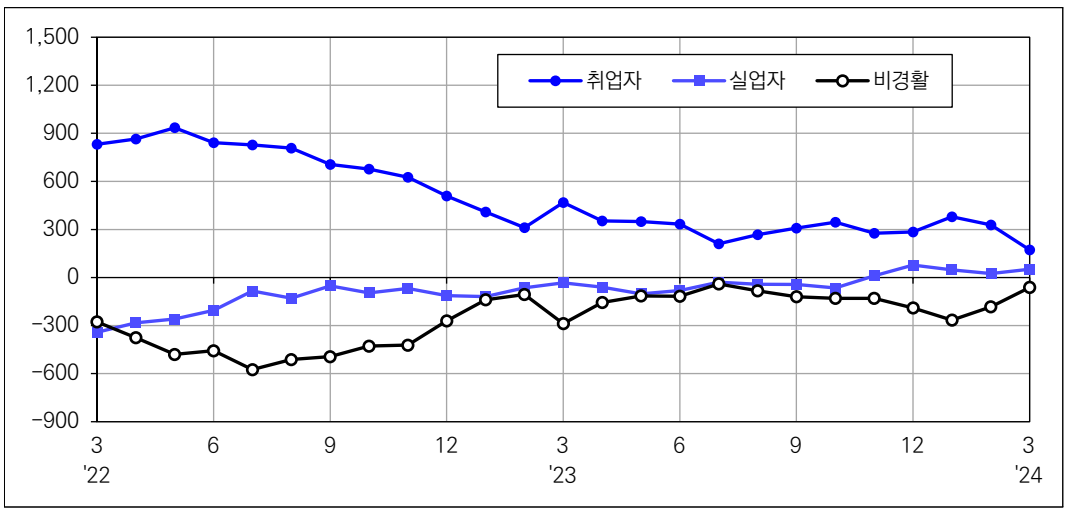

1) 본고에서 전월대비 수치는 통계청 계절조정계열 자료를 활용함.

[그림 1]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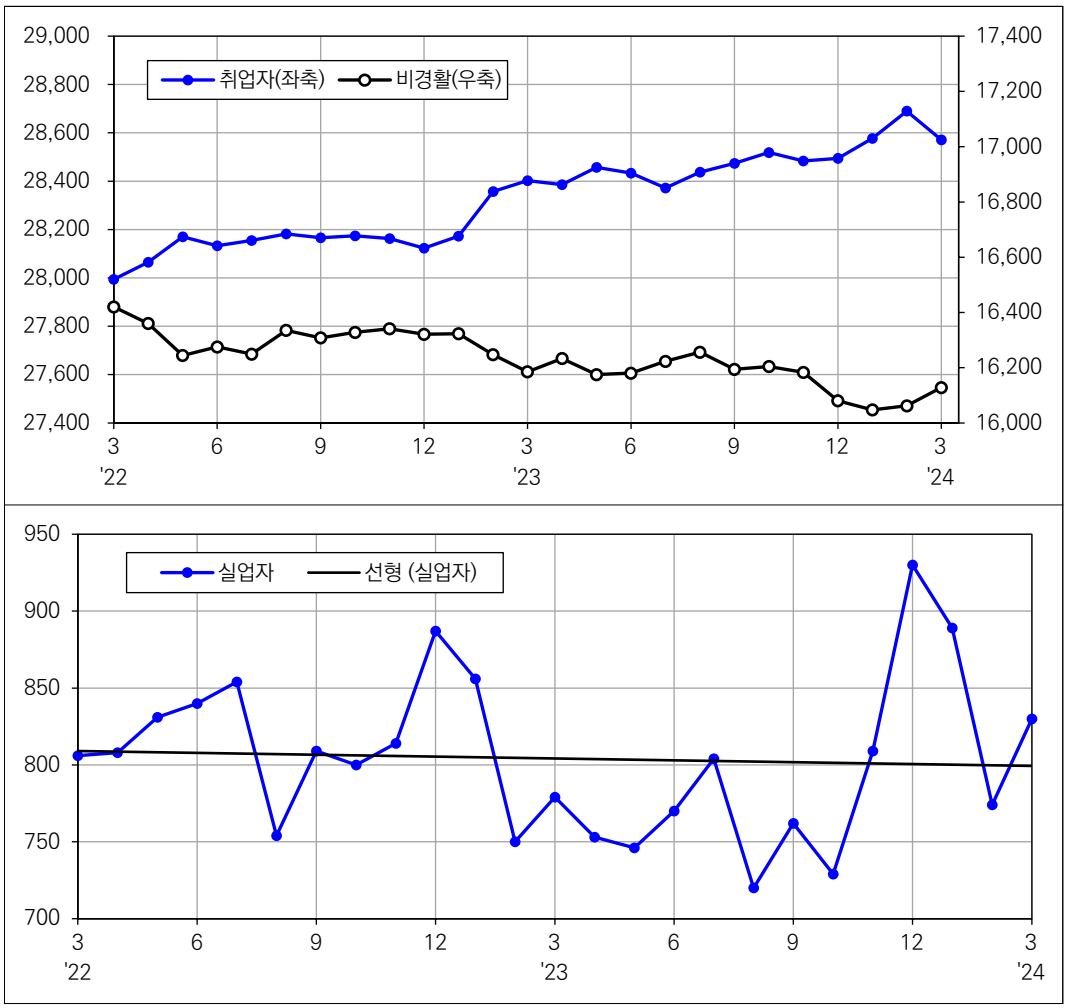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4년 3월은 전월대비 20대와 60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하였음.

- 20대 초반 여성은 전년동월대비 보건사회복지,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취업자가 감소함.
- 60대 중후반 이상은 전년동월대비 보건사회복지와 공공행정 등 일자리 관련 취업자 증가폭이 소폭 둔화됨.

〈표 1〉 연령별 취업자 동향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 ) 안은 계절조정계열 전월대비)

	15~19세				20대				30대			
	1월	2월	3월	(전월비)	1월	2월	3월	(전월비)	1월	2월	3월	(전월비)
취업자	-38	-31	-34	(-3)	-48	-29	-97	(-68)	86	70	92	(22)
실업자	-6	4	7	(3)	5	-32	-43	(-11)	19	26	17	(-9)
비경활	24	27	3	(-3)	156	-163	-65	(72)	-118	-135	-112	(-7)
실업률	-1.1	3.8	5.4	(1.6)	0.1	-0.7	-0.8	(-0.1)	0.2	0.4	0.2	(-0.2)
고용률	-1.6	-1.4	-1.5	(-0.1)	1.2	1.5	0.4	(-1.1)	1.4	1.1	1.3	(0.2)
	40대				50대				60세 이상			
	1월	2월	3월	(전월비)	1월	2월	3월	(전월비)	1월	2월	3월	(전월비)
취업자	-41	-61	-79	(-18)	71	83	59	(-24)	350	297	233	(-64)
실업자	-2	-6	5	(11)	-2	-4	36	(40)	35	36	30	(-6)
비경활	-91	-95	-69	(2)	-18	-38	-29	(-9)	94	7	209	(66)
실업률	0.0	-0.1	0.1	(0.2)	0.0	-0.1	0.5	(0.6)	0.2	0.4	0.4	(0.0)
고용률	0.8	0.6	0.4	(-0.2)	0.4	0.5	0.1	(-0.4)	1.1	0.6	0.2	(-0.4)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2] 연령별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계절조정계열

(단위 : 천 명,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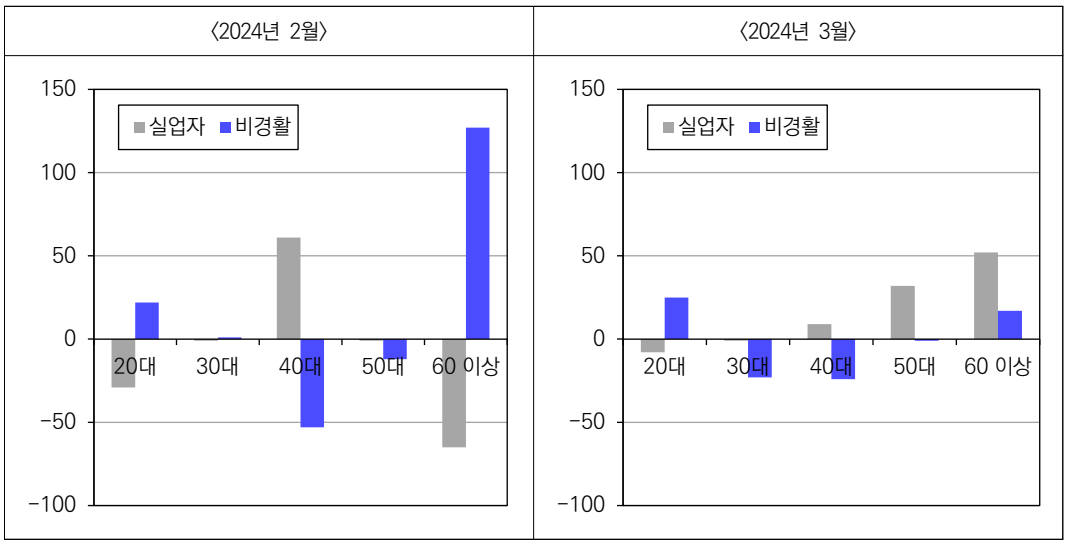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월대비) 산업별로는 음식숙박, 도소매, 부동산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보건복지, 공공행정 등에서는 취업자가 감소하였음.

[그림 3] 산업별 취업자 수 변화 : 계절조정계열(2020년 2월을 100으로 정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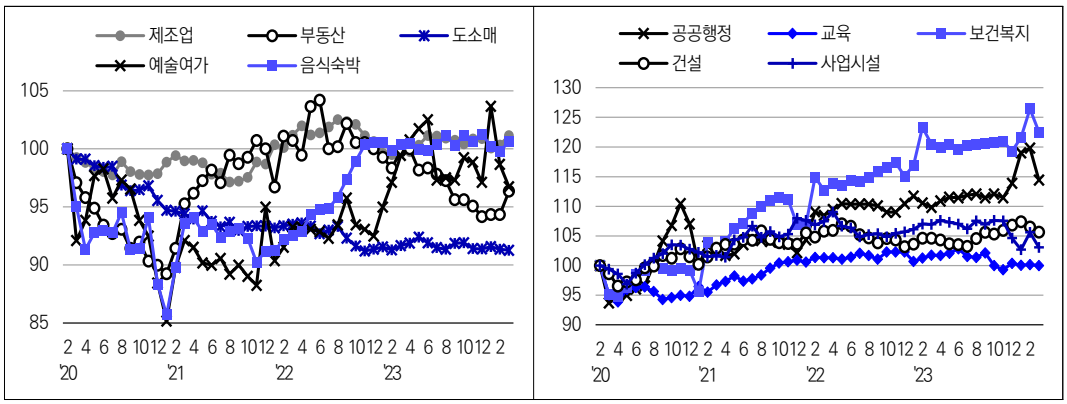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2〉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3개월 전 대비 (계절조정계열)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7	-33	-50	18	-33	-7	-22	-1.5
광업	-1	1	0	-1	1	0	0	0.0
제조업	20	38	49	-36	12	36	12	0.3
전기 · 가스 · 증기	9	9	7	4	4	-5	3	3.3
수도 · 원료재생	0	-5	-11	-3	3	1	1	0.7
건설업	73	36	22	11	-18	-17	-24	-1.1
도매 및 소매업	0	2	-14	7	-8	-3	-4	-0.1
운수 및 창고업	66	54	58	13	9	10	32	1.9
숙박 및 음식점업	-8	-2	7	-24	-10	19	-15	-0.6
정보통신업	49	80	67	-7	34	-6	21	2.0
금융 및 보험업	-13	1	-32	6	0	-16	-10	-1.3
부동산업	-28	-21	-19	1	0	11	12	2.3
전문 · 과학 · 기술	73	78	98	18	11	27	56	4.1
사업시설관리지원	-45	-19	-51	-26	39	-34	-21	-1.5
공공행정 · 사회보장	71	98	52	57	9	-60	6	0.5
교육서비스업	-13	-22	-33	-6	2	-3	-7	-0.4
보건 및 사회복지	104	72	50	55	115	-93	77	2.7
예술 · 스포츠 · 여가	42	8	-14	34	-26	-10	-2	-0.4
협회 · 단체 · 수리 · 기타	8	-21	-9	8	-19	9	-2	-0.2
가구 내 고용 · 자가소비	-18	-23	-6	0	-3	7	4	5.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종사상 지위별로 살펴보면, 2024년 3월은 전월대비 임시직 취업자가 감소하였고 일용직은 증가 전환함.

– 상용직은 대다수의 산업에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되었음. 임시직은 도소매업에서 감소하였음. 일용직의 경우 공공행정에서 증가 전환함.

〈표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

	전년동월대비(원계열)			전월대비(계절조정계열)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상용직	320	357	286	-34	43	42
임시직	137	207	97	44	229	-157
일용직	-82	-177	-168	-34	-49	26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30	38	-1	2	4	-2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1	-60	-35	13	-39	-7
무급가족종사자	-25	-36	-7	16	-15	4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표 4〉 종사상 지위별, 산업별 취업자 수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농림어업	6	10	11	2	2	2	1	-8	-13	5	0	5	7	-7	-33
제조업	-30	8	18	7	27	22	13	0	-9	15	8	10	13	2	7
건설업	44	35	12	16	25	27	-27	-56	-40	15	21	14	19	8	5
도소매	71	65	57	-30	-24	-52	-14	-9	-6	-17	-15	-18	-18	-19	0
운수창고	37	44	31	23	15	25	-11	-11	-10	7	4	2	12	0	6
음식숙박	4	-21	1	8	50	44	-11	-37	-37	10	13	5	-13	-5	-13
정보통신	21	44	28	23	29	24	-1	-1	-1	2	-1	-3	5	11	20
금융보험	-19	-18	-39	3	17	8	0	0	-1	-1	-1	-3	3	2	2
부동산	-12	-14	-11	-23	-19	-19	3	1	1	3	7	6	-1	3	4
전문과학기술	89	99	104	-6	-4	6	-3	-7	-9	11	8	-2	-20	-17	-3
사업관리지원	-6	12	12	-10	13	-6	-8	-25	-32	-15	-8	-11	-3	-9	-12
공공행정	47	63	25	28	39	23	-4	-4	3	-	-	-	-	-	-
교육서비스	29	25	44	-39	-48	-77	3	5	2	1	1	1	-6	-3	0
보건복지	16	-14	-5	90	82	65	4	10	2	-9	-4	-10	3	-1	-3
예술스포츠	14	17	7	31	1	-22	-10	-9	-5	1	1	0	5	-5	3
협회단체	-4	-9	-10	28	19	27	-7	-14	-13	0	4	2	-6	-20	-14
가구 내 고용	-1	1	0	-12	-15	-4	-7	0	1	-	-	-	1	0	-2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3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6만 2천 명으로 감소폭이 줄어듦.

– 남성은 전년동월대비 +6만 7천 명으로 '취업준비(+4천 명)'와 '쉬었음'(+5만 명)에서 증가 전환하였고, 여성은 -13만 명으로 '통학'(-1천 명)에서 감소 전환함.

[그림 4] 성별(좌 : 남자, 우 : 여자) 비경제활동인구 사유별 증감

(단위 : 천 명,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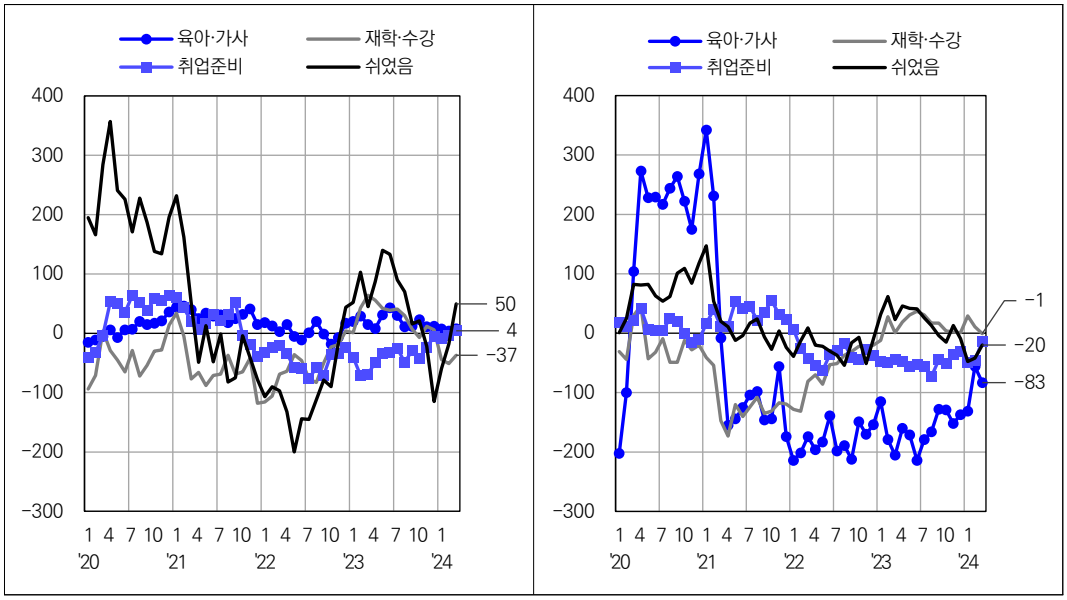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제조업 취업자 증가폭 소폭 확대,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세 소폭 둔화

○ 2024년 3월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4만 9천 명 증가하여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전월대비 2개월 연속 증가하였음(2월 +3만 8천 명).

–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체 종사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폭이 둔화되었음.

– 계절조정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3만 6천 명 증가하였음.

[그림 5] 제조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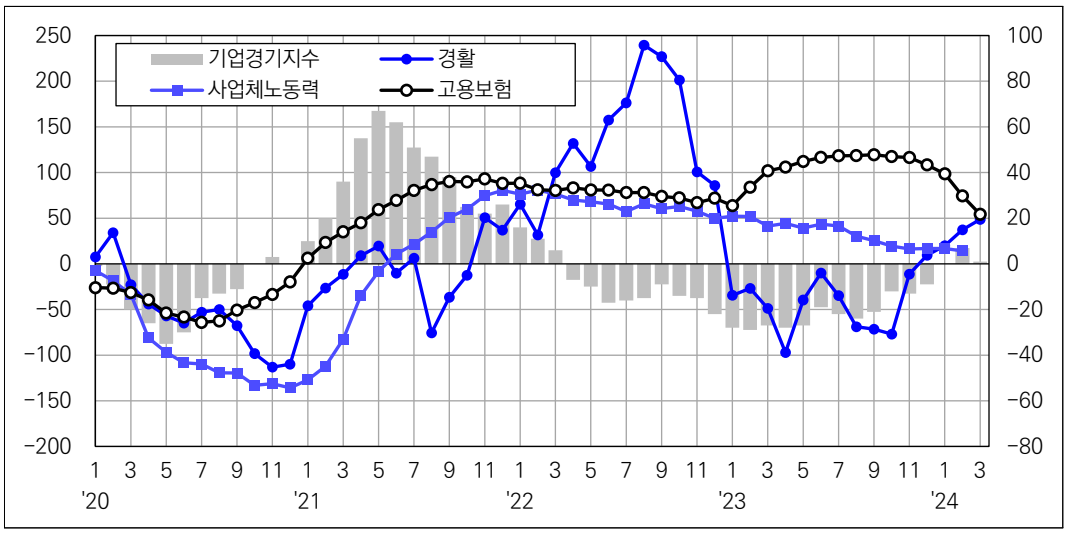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6] 계절조정 제조업 취업자 수

(단위 : 천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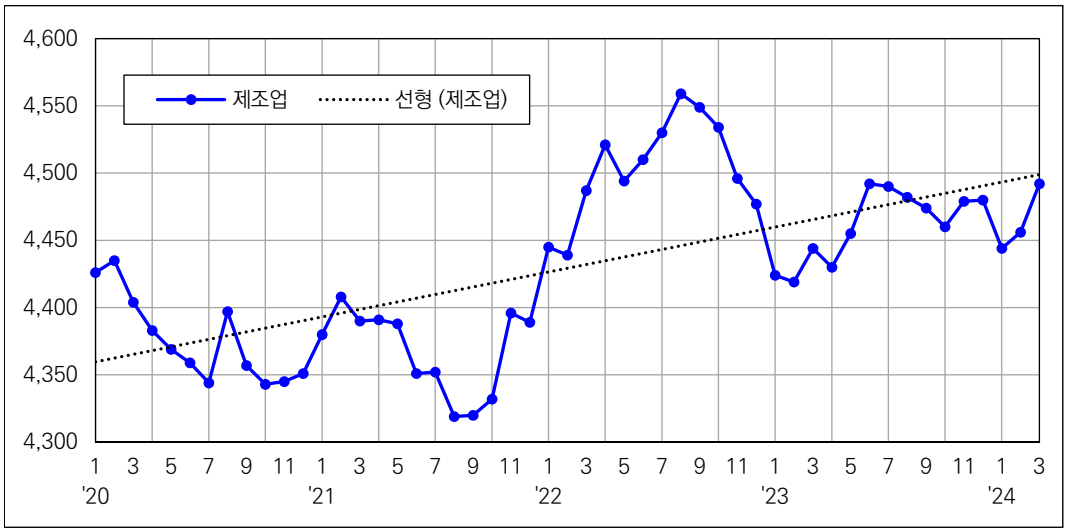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24년 3월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2만 2천 명 증가하여 증가세가 둔화됨.

– 건설업 피보험자는 7개월 연속 감소하였고, 경활 취업자와 사업체 종사자도 증가폭이 축소됨.

[그림 7] 건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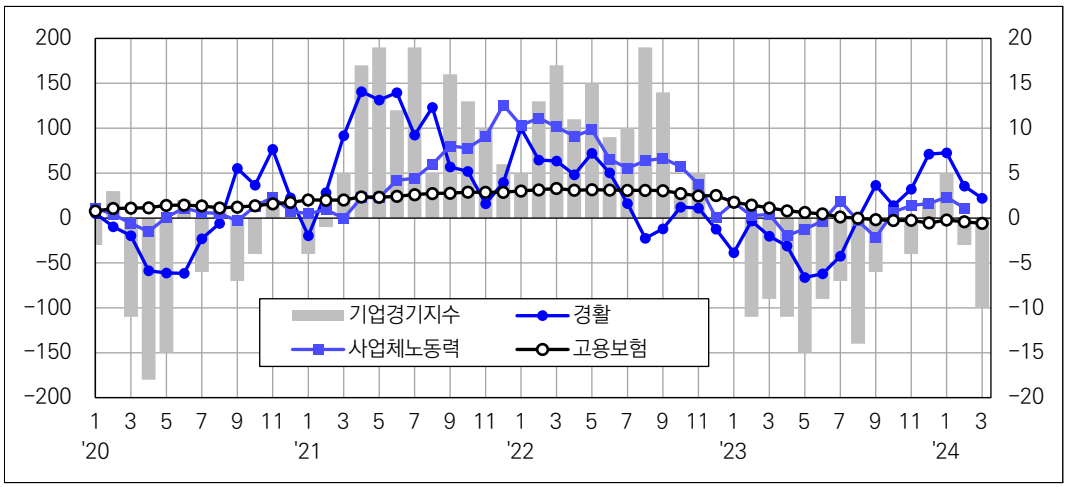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 2024년 3월 서비스업은 전년동월대비 13만 9천 명 증가폭이 둔화됨(2월 +28만 7천 명).

- (숙박음식) 경활 취업자가 감소로 전환하였으며 생산지수는 감소함.
- (금융보험) 경활 취업자는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폭은 둔화됨.
- (과학기술) 경활 취업자는 증가폭이 확대되었고, 그 외 지표는 유지함.
- (예술스포츠) 경활 취업자는 감소폭이 확대되었고, 기업경기지수는 감소함.

[그림 8] 숙박 및 음식점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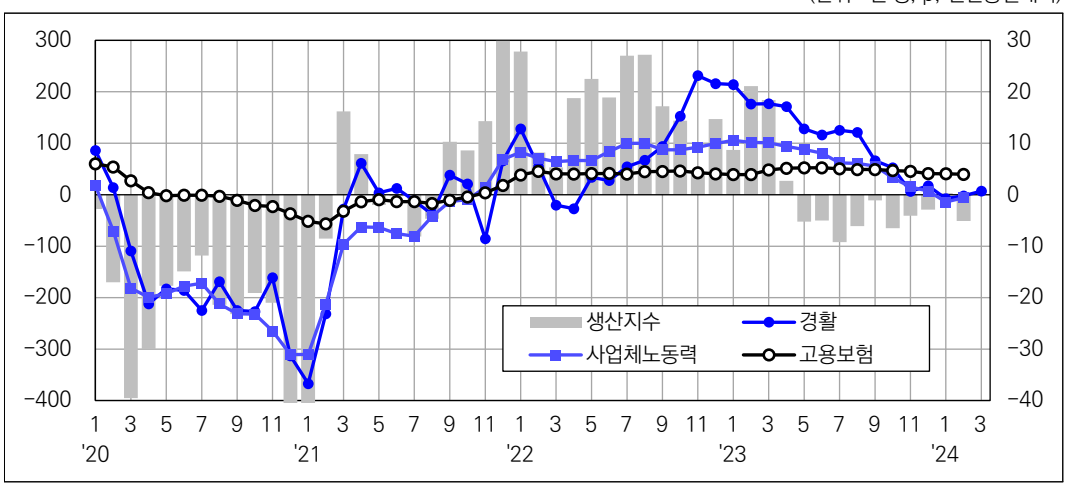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9] 금융 및 보험업 고용 증감(좌) 및 생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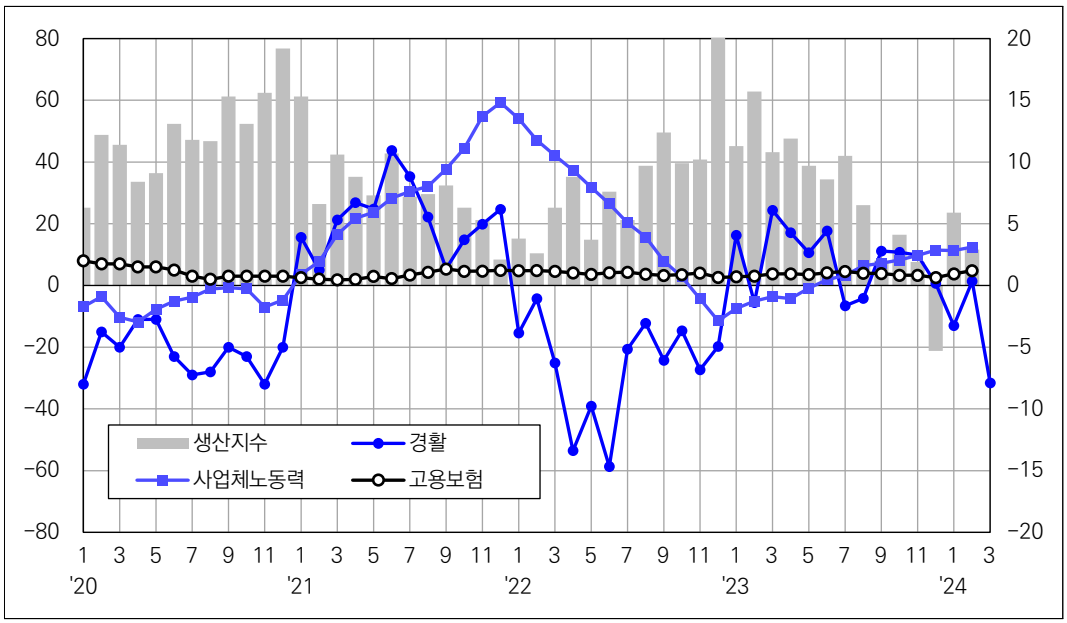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서비스업동향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그림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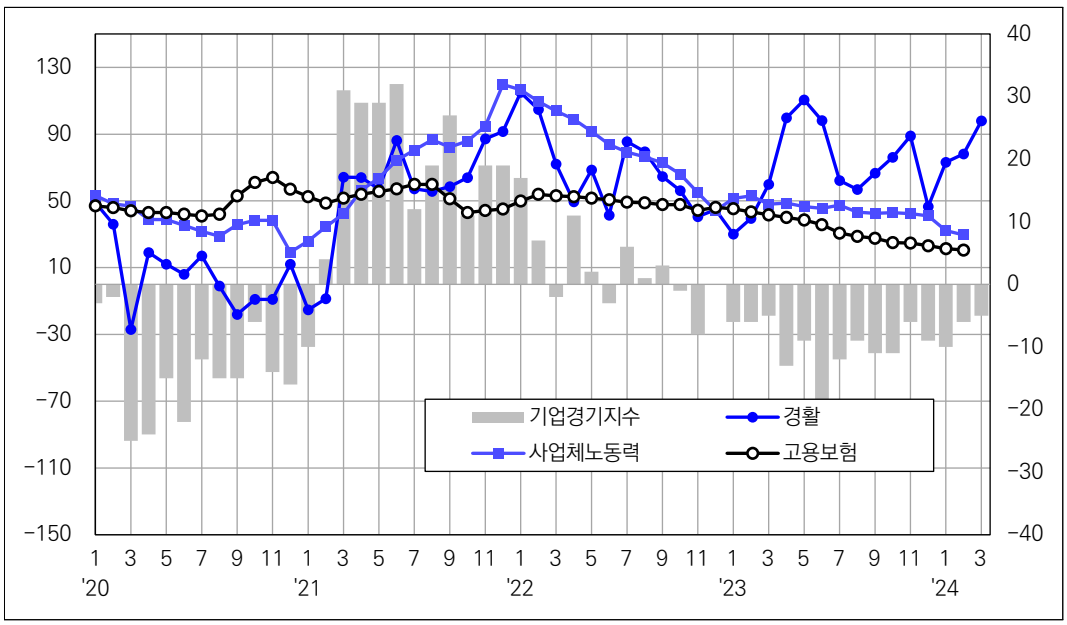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그림 11]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고용 증감(좌) 및 기업경기지수(우) 증감

(단위 : 천 명, p,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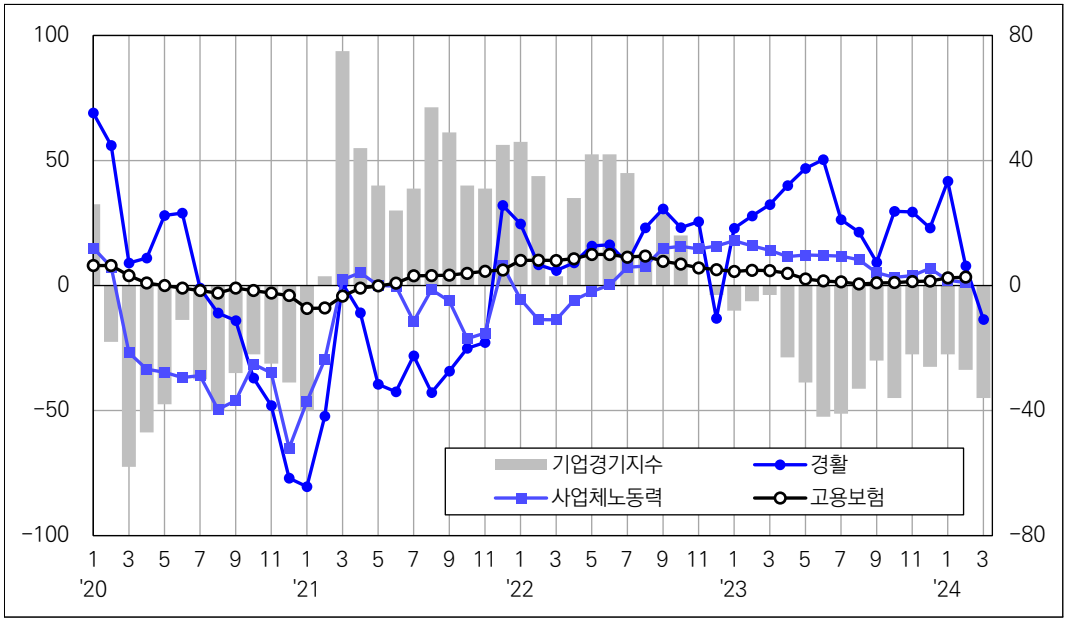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 한국은행, 「기업경기조사」.

(황지영, 동향분석실 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2024년 1월 명목임금은 전년동월대비 8.6% 하락

○ 2024년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428만 9천 원(-8.6%)임.

- 2024년 1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55만 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9.0% 하락,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은 182만 4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 감소는 명절 상여금 등의 영향으로 특별급여가 전년동월대비 44.5% 감소한 영향이 큼. 2023년 설 명절은 1월이었으나 2024년 설 명절은 2월에 포함되어 있어 설 상여금 등 특별급여가 크게 감소함.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증가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 증가 등의 영향임. 2024년 1월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4.8% 증가한 가운데 건설업 부문 임시일용근로자는 6.2% 증가하였으며, 건설업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전체 임시일용근로자의 138.8% 수준임.

※ 초과급여 :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2024년 1월 소비자물가지수(2020=100.0)를 고려한 실질임금은 전년동월대비 11.1% 하락함.

◈ 2023년 협약임금인상률(4.2%, 임금총액 기준)은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

○ 민간부문의 협약임금인상률은 4.4%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 공공부문은 2.4%로 전년동월대비 1.2%p 상승함.

※ 협약임금인상률은 상용근로자 100인 이상 전 사업체(농업, 수렵업, 임업, 어업,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국·공립 초중등 교육기관은 제외)를 대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 교섭에 따라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 변동성 급여를 제외한 임금인상률임.

〈표 1〉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0=100.0)

		2020	2021	2022	2023	2023 1월	2024 1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3,527 (1.1)	3,689 (4.6)	3,869 (4.9)	3,966 (2.5)	4,694 (-0.6)	4,289 (-8.6)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719 (0.4)	3,893 (4.7)	4,095 (5.2)	4,211 (2.8)	5,007 (-0.3)	4,289 (-9.0)
	정액급여	3,077 (2.2)	3,181 (3.4)	3,319 (4.3)	3,444 (3.8)	3,482 (3.9)	3,602 (3.4)
	초과급여	200 (-0.9)	208 (3.7)	220 (5.7)	227 (3.3)	205 (2.1)	224 (9.2)
	특별급여	441 (-9.9)	504 (14.3)	556 (10.4)	540 (-2.9)	1,320 (-10.1)	732 (-44.5)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636 (7.8)	1,700 (3.9)	1,747 (2.8)	1,785 (2.2)	1,774 (-0.4)	1,824 (2.8)
소비자물가지수		105.7 (0.5)	104.0 (2.5)	109.3 (5.1)	111.6 (3.6)	110.1 (5.0)	113.2 (2.8)
실질임금증가율		0.5	2.0	-0.2	-1.1	-5.3	-11.1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통계청, https://kosis.kr/

[그림 1] 상용근로자의 임금 구성

(단위 : 천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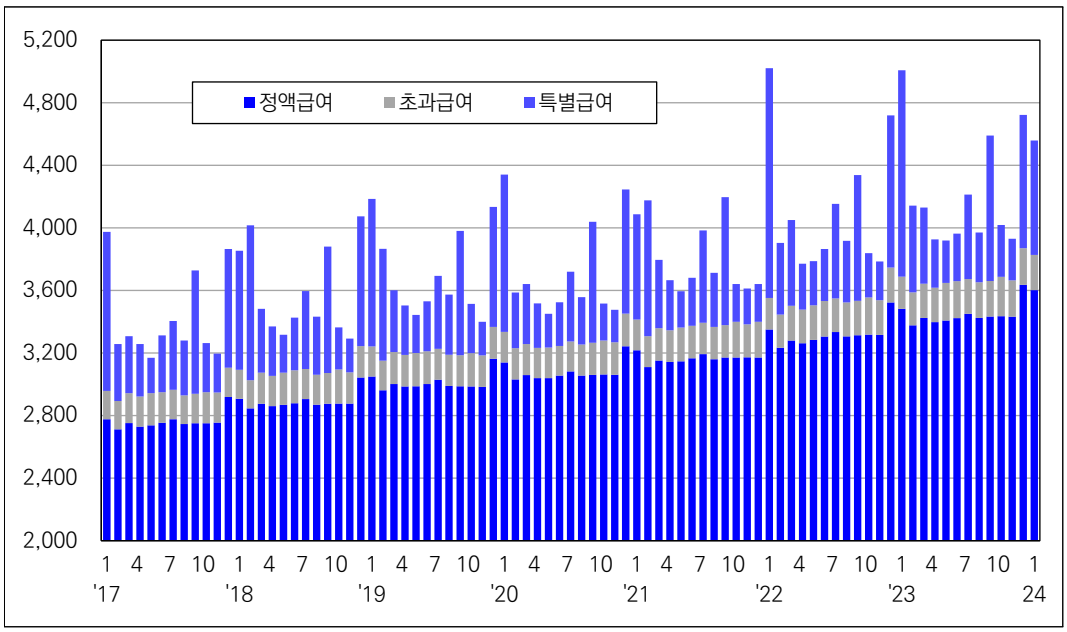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2] 임시 · 일용근로자의 상대임금 비율

(단위 : %, 상용근로자 임금=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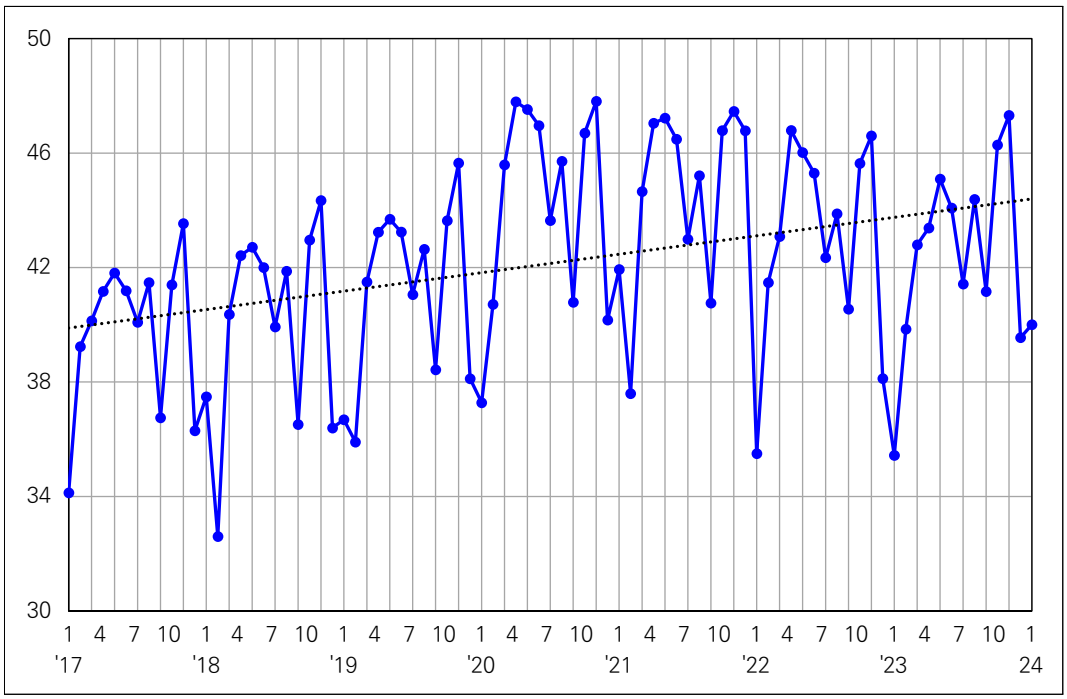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1월 중소규모 · 대규모 사업체 모두 전년동월대비 임금 감소

○ 2024년 1월 중소규모(상용근로자 1~299인) 사업체의 임금은 368만 2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8% 하락, 대규모(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 임금은 725만 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2% 하락함.[2)]

- 중소규모 · 대규모 사업체 모두 특별급여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47.7%, 42.6% 하락함. 특히 제조업 부문 특별급여는 중소규모 · 대규모 사업체 각각 54.7%, 49.8% 하락함.
-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4.3% 상승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의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12.1% 하락함.

2)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는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사업체 규모를 구분하고 있으며, 중소규모 사업체는 상용근로자가 1~299인, 대규모 사업체는 상용근로자 수 300인 이상 규모를 의미함.

〈표 2〉 사업체 규모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천 원, %)

		2022	2023	2023	2024
				1월	1월
중소규모	소 계	3,462 (4.4)	3,537 (2.2)	3,869 (1.2)	3,682 (-4.8)
	상용임금총액	3,675 (4.7)	3,767 (2.5)	4,132 (1.6)	3,919 (-5.2)
	정액급여	3,139 (4.2)	3,249 (3.5)	3,268 (3.6)	3,370 (3.1)
	초과급여	186 (5.7)	187 (0.8)	167 (-1.1)	184 (10.2)
	특별급여	350 (8.7)	331 (-5.3)	697 (-6.1)	365 (-47.7)
	임시일용임금총액	1,711 (2.4)	1,746 (2.0)	1,720 (-0.7)	1,795 (-4.3)
대규모	소 계	5,922 (6.1)	6,071 (2.5)	8,769 (-5.2)	7,259 (-17.2)
	상용임금총액	6,049 (6.4)	6,212 (2.7)	9,006 (-4.9)	7,449 (-17.3)
	정액급여	4,155 (4.6)	4,325 (4.1)	4,462 (4.5)	4,653 (4.3)
	초과급여	377 (5.5)	406 (7.6)	379 (8.1)	405 (6.7)
	특별급여	1,516 (11.8)	1,481 (-2.3)	4,164 (-14.2)	2,391 (-42.6)
	임시일용임금총액	2,321 (4.8)	2,375 (2.3)	2,565 (0.1)	2,254 (-12.1)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3]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정액급여 증가율(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증가율(우, 누계)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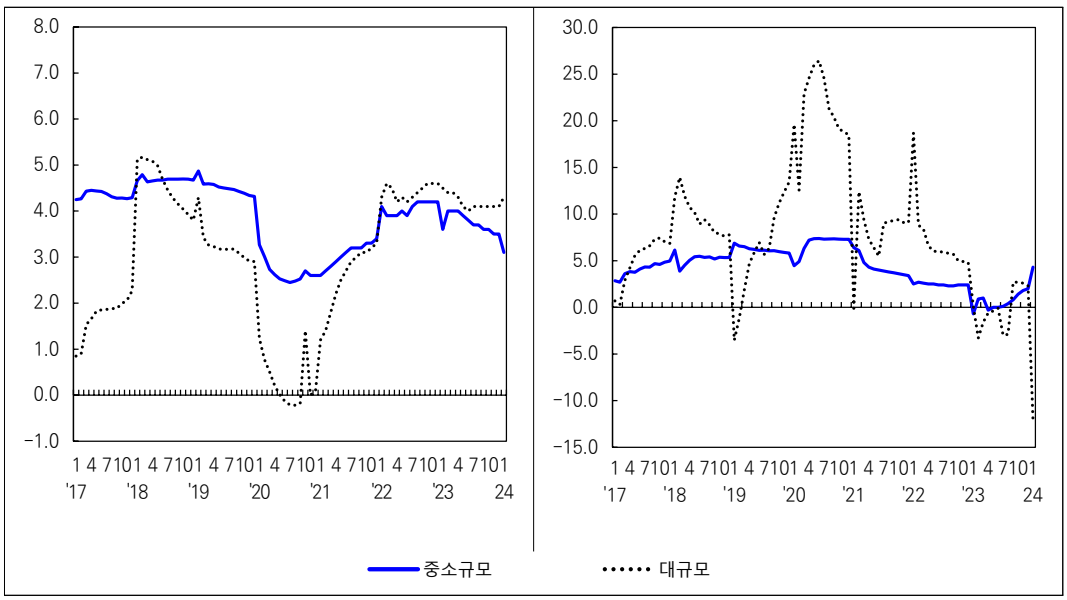

주 : 1인 기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와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의 월별 누계값 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1월 근로자 1인당 산업별 임금상승률은 일부 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전년동월대비 하락

○ 2024년 1월 전년동월대비 임금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제조업(-15.9%), 금융 및 보험업(-14.8%) 등으로 나타남.

- 이들 산업에서 임금 감소가 컸던 데는 특별급여 감소 영향으로 보임(제조업의 특별급여 -50.1%, 금융 및 보험업의 특별급여 -34.0%).
- 반면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9.0%), 광업(2.5%), 숙박 및 음식점업(0.6%)은 전년동월대비 임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 산업별 임금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제10차 표준산업분류)

(단위 : 천 원, %)

	2022	2023	2023	2024
			1월	1월
전 산 업	3,869(4.9)	3,966(2.5)	4,694(-0.6)	4,289(-8.6)
광업	4,608(4.4)	4,636(0.6)	5,285(2.0)	5,416(2.5)
제조업	4,484(5.8)	4,633(3.3)	6,258(-2.2)	5,262(-15.9)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6,907(2.3)	7,188(4.1)	6,351(-1.7)	7,559(19.0)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4,168(1.8)	4,297(3.1)	4,575(3.4)	4,376(-4.4)
건설업	3,229(4.0)	3,359(4.0)	3,632(2.4)	3,587(-1.2)
도매 및 소매업	3,773(6.3)	3,921(3.9)	4,413(5.7)	4,191(-5.0)
운수 및 창고업	4,040(6.5)	4,185(3.6)	4,418(1.3)	4,160(-5.8)
숙박 및 음식점업	2,004(5.2)	2,097(4.7)	2,202(7.4)	2,216(0.6)
정보통신업	4,999(4.2)	5,120(2.4)	5,938(-6.7)	5,797(-2.4)
금융 및 보험업	7,324(5.2)	7,338(0.2)	10,198(-2.5)	8,691(-14.8)
부동산업	3,086(4.5)	3,117(1.0)	3,347(1.1)	3,295(-1.5)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376(5.3)	5,464(1.6)	5,978(-3.8)	5,522(-7.6)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2,584(3.7)	2,687(4.0)	2,830(1.8)	2,818(-0.4)
교육서비스업	3,435(2.4)	3,508(2.1)	4,167(1.4)	3,805(-8.7)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122(3.6)	3,132(0.3)	3,373(0.9)	3,222(-4.5)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77(2.8)	3,058(-0.6)	3,588(4.7)	3,364(-6.2)
협회 ·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832(4.9)	3,009(6.2)	3,337(7.1)	3,097(-7.2)

주 : 1)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임금총액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1월 임금총액이 가장 높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869만 1천 원)이고, 임금총액이 가장 낮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221만 6천 원)임.

◈ 2024년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월평균 근로시간은 165.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2시간 증가(월력상 근로일수는 전년동월대비 2일 증가)

○ 2024년 1월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73.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7시간 증가,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90.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1시간 감소함.

- 상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력상 근로일수 증감에 영향을 크게 받는 편이며, 전년동월대비 근로일수가 2일(20일→22일) 증가한 영향이 큼.
-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 감소는 임시일용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임시일용근로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임.

○ 2024년 1월 사업체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을 보면, 중소규모 사업체는 163.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0.9시간 증가, 대규모 사업체는 170.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6시간 증가함.

- 중소규모 사업체 중 정보통신업(9.5%), 대규모 사업체 중 교육서비스업(10.2%) 부문에서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함.

[그림 4]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좌, 누계)과 임시일용근로자 일일 평균 근로시간(우, 누계) 추이

(단위 : 시간/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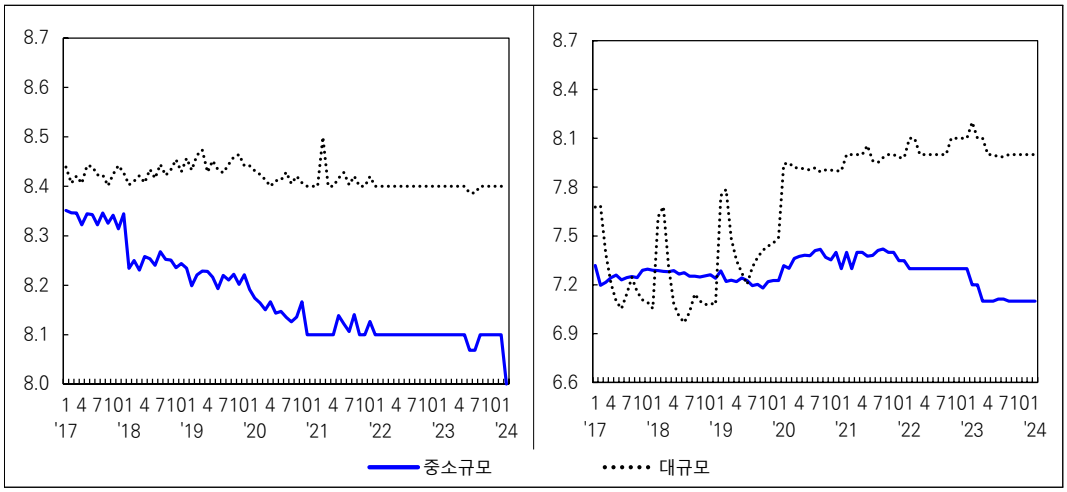

주 : 일일 평균 근로시간은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시간을 상용근로자, 임시일용근로자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일수로 나눈 것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표 4〉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22	2023	2023	2024
				1월	1월
중소규모	전체 근로시간	158.3 (-1.2)	155.3 (-1.9)	153.0 (-2.1)	163.9 (7.1)
	상용 총근로시간	165.9 (-1.1)	164.0 (-1.1)	160.8 (-1.3)	173.5 (7.9)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8.2 (-1.2)	156.7 (-0.9)	154.2 (-1.0)	166.4 (7.9)
	상용 초과근로시간	7.7 (0.0)	7.3 (-5.2)	6.6 (-8.3)	7.1 (7.6)
	임시일용 근로시간	96.4 (-1.0)	88.2 (-8.5)	89.2 (-9.9)	87.7 (-1.7)
대규모	전체 근로시간	160.4 (-1.2)	160.5 (0.1)	157.5 (-0.9)	170.1 (8.0)
	상용 총근로시간	161.7 (-1.0)	162.1 (0.2)	159.0 (-0.6)	171.9 (8.1)
	상용 소정실근로시간	150.6 (-1.1)	150.9 (0.2)	148.2 (-0.8)	161.0 (8.6)
	상용 초과근로시간	11.0 (-0.9)	11.2 (1.8)	10.8 (2.9)	10.9 (0.9)
	임시일용 근로시간	125.0 (-2.3)	117.5 (-5.9)	119.5 (-6.6)	123.6 (3.4)

주 :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24년 1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근로일수 증가 영향으로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증가

○ 2024년 1월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한 산업은 정보통신업(9.4%), 제조업(8.9%),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9%)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의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2% 감소함.

○ 2024년 1월 월평균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181.3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79.1시간) 순으로 나타난 가운데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산업은 건설업(135.6시간)임.

〈표 5〉 산업별 근로시간 동향(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기준)

(단위 : 시간, %)

	2022	2023	2023	2024
			1월	1월
전 산 업	158.7 (-1.2)	156.2 (-1.6)	153.8 (-1.9)	165.0 (7.3)
광업	174.8 (-2.8)	168.5 (-3.6)	164.5 (-3.8)	175.1 (6.4)
제조업	171.1 (-1.4)	170.5 (-0.4)	166.5 (-1.5)	181.3 (8.9)
전기 · 가스 ·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158.6 (-1.9)	160.0 (0.9)	161.3 (-2.7)	156.1 (-3.2)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및 원료재생업	174.4 (-1.4)	170.0 (-2.5)	169.3 (-2.1)	179.1 (5.8)
건설업	134.3 (-1.2)	128.7 (-4.2)	127.4 (-5.8)	135.6 (6.4)
도매 및 소매업	162.3 (-0.9)	159.2 (-1.9)	157.5 (-1.5)	168.3 (6.9)
운수 및 창고업	160.6 (0.2)	160.6 (0.0)	157.8 (-0.3)	167.7 (6.3)
숙박 및 음식점업	146.5 (-1.3)	138.8 (-5.3)	138.4 (-3.9)	143.9 (4.0)
정보통신업	162.7 (-0.9)	162.2 (-0.3)	159.1 (-0.6)	174.0 (9.4)
금융 및 보험업	159.8 (-1.3)	159.3 (-0.3)	158.2 (1.1)	171.3 (8.3)
부동산업	169.4 (-1.4)	167.5 (-1.1)	165.6 (-0.4)	175.6 (6.0)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0.3 (-0.8)	158.8 (-0.9)	155.7 (-1.6)	169.5 (8.9)
사업시설관리 및 임대서비스업	159.8 (-1.4)	158.2 (-1.0)	156.5 (-1.3)	167.8 (7.2)
교육서비스업	136.1 (-0.8)	135.9 (-0.1)	131.4 (-0.4)	140.4 (6.8)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5.3 (-1.9)	150.7 (-3.0)	148.0 (-2.9)	158.1 (6.8)
여가 관련 서비스업	150.8 (-1.2)	148.2 (-1.7)	146.5 (-0.4)	153.0 (4.4)
협회 · 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0.3 (-1.3)	160.3 (0.0)	158.9 (-0.4)	169.1 (6.4)

주 : 1)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임.
2) 2020년 1월부터 제10차 표준산업분류를 반영하여 산업별 근로시간을 공표함에 따라 2020년 이전 자료와의 산업별 비교에 유의해야 함.
3)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김복순, 동향분석실 전문위원)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2024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조정사건 건수는 6건
  – 3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7건)보다 1건 적은 수치임.

○ 2024년 3월 조정성립률 50.0%
  – 3월 조정성립률은 전년 동월 성립률 25.0%보다 25.0%p 높은 수치임.

〈표 1〉 2023년, 2024년 3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 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24. 3	6	7	3	2	1	3	1	2	0	1	4	50.0%
2023. 3	7	4	1	1	0	3	0	3	0	0	5	25.0%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중재사건

○ 2024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노동쟁의 관련 중재사건 건수는 1건
  – 3월 중재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 건수(0건)보다 1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건수는 1건임.

〈표 2〉 2023년, 2024년 3월 중재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진행 중
		소계	중재재정	행정지도	취하철회	
2024. 3.	1	0	0	0	0	1
2023. 3.	0	2	1	0	1	5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심판사건

○ 2024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심판사건 건수는 198건

- 3월 심판사건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180건)보다 18건 많은 수치임.
-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27.2%(56건), 기각 · 각하 · 취하 · 화해 비율이 72.8%(150건)를 차지함.

〈표 3〉 2023년, 2024년 3월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4. 3	198	206	49	7	105	3	23	19	547
2023. 3	180	208	39	16	118	4	16	15	41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복수노조사건

○ 2024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에 접수된 복수노조사건 건수는 5건

- 3월 복수노조사건[1] 접수 건수는 전년 동월(7건)보다 2건 적은 수치임.
- 전부 및 일부 인정 비율이 0.0%(0건), 기각 · 각하 · 취하 · 화해 비율이 100.0%(2건)를 차지함.

〈표 4〉 2023년, 2024년 3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 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내역							진행 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24. 3	5	2	0	0	2	0	0	0	10
2023. 3	7	7	1	0	6	0	0	0	11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1) 복수노조사건은 교섭요구, 교섭대표, 교섭단위, 공정대표 사건 등 복수노조제도와 관련된 사건 일체를 말함.

◈ 민주노총, “민주노총의 회계공시 참여 거부” 투표결과 부결

- 3월 18일 민주노총은 80차 임시대의원회의를 열어 ‘민주노총의 회계공시 참여 거부’를 내용으로 하는 안건을 투표에 부쳤으나 재석 대의원 1,002명 가운데 493명으로 가결 요건인 찬성 502명을 채우지 못해 부결됐다고 밝혔음.
- 정부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명분으로 도입한 회계공시 제도는 단위노조와 산별노조는 물론 총연합단체에도 회계공시 의무를 부과하고, 어느 한 곳이라도 공시하지 않을 경우 소속 조합원이 납부한 조합비에 대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설계돼 있음.
-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조합원 이탈 등을 우려해 지난해 공시 참여를 결정했으나,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지난달 28일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공시 거부를 만장일치로 결의하면서 민주노총 내부에서 다시 논쟁이 불붙은 상태였음.
- 4월 30일 마감하는 올해 상반기 회계공시엔 민주노총에서 보건의료노조 등 3곳, 한국노총 소속 24곳 등 모두 43곳이 공시를 이미 마친 상태임.

◈ 한국노총 산하 노조 63% “윤석열 정부 들어 노조활동 위축”

- 4월 8일 한국노총은 ‘현 정부의 노동정책 및 경기상황 악화에 따른 노사관계 변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 정부 노동정책과 최근 고물가 등 경기침체 상황이 노사관계와 노동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했음.
- 응답 노조의 63%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으로 노조활동이 위축됐다고 답변했고 노조활동이 개선됐다는 답변은 한 곳도 없었음.
- 노조활동 위축을 경험한 노조에 구체적 상황을 물었더니 사측이 근로시간면제자 인원 축소를 요구(29.2%)하는 유형이 많았음.
- 근로시간면제 시간 축소를 요구(27.7%)하거나 면제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강화(23.1%)하면서 타임오프 제도를 통한 노조활동 개입·통제 시도가 두드러졌음.
- 정부 노동정책이 사업장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답변도 42.3%(악화됐다 27.9%·많이 악화됐다 14.4%)에 달했음.
- 노사관계 악화 유형으로는 노조활동 지원 단절 및 축소(45.2%)가 가장 많았고 노사교섭 기피 및 노사협의 등 위축(16.7%), 단체협약 시정 및 변경 요구 증가(11.9%), 노조혐오 분위기를 조성(6.0%) 등의 순이었음.
- 코로나19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최근 2년간 경영상황을 물었더니 응답 노조의 절반이 넘

는 52.7%가 "나빠졌다" 혹은 "매우 나빠졌다"라고 답했고 경영악화로 구조조정을 실시한 사업장도 14.6%, 임금체불이나 임금지급 지연이 발생한 곳은 3.4%이었음.

- 본 설문에는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326개 노조가 응답했음.

◈ 기업 43% "중대재해처벌법 가장 큰 부담"

- 3월 12일 한국경총은 '2024년 기업규제 전망조사'를 실시한 결과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응답 기업의 43.3%(복수응답)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고 밝혔음.
-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를 꼽았고, 21%는 '최저임금제'라고 답했으며 법인세(18.1%), 탄소 중립 등 환경 규제(15%)가 뒤를 이었음.
- 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에 대해서는 100점 만점에 54.6점을 주었고 응답 기업의 48%는 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 '노동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를 지목했음.
-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가 29.7%,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 26%, '경제 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 17.9% 순이었음.
- 올해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부에 가장 바라는 점은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라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고 속도감 있는 기업 규제완화 추진(39%), 규제 건의 시 투명하고 신속한 피드백 제공(21.2%), 규제개선 추진체계 일원화와 총체적 · 유기적 운영(12.2%), 규제 관련 이해관계자 협의 · 조정 기구 신설(11.8%) 순이었음.
- 조사는 지난 1월 22일~2월 6일 전국 30인 이상 규모의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5~30인 미만 사업장에 추가적으로 조사했을 경우, 부담을 느끼는 비중은 더 높았을 것으로 예상됨.

◈ 삼성 반도체 노동자 자녀 선천성 질환 '태아산재' 첫 인정

- 3월 22일 근로복지공단은 서울남부 질판위가 1990~2000년대 삼성 반도체공장에서 근무했던 여성 3명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음.
- 세 여성은 출산 전까지 10여 년간 삼성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하다 벤젠, 아세트알데히드, 전리방사선 등의 유해 물질에 노출됐음.
- 이들의 자녀는 선천성 거대결장증, 무신장증, 발달장애 등의 질병을 안고 태어났고 질판위는 여성 노동자들이 △여러 유해물질에 노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반도체 업종 여성 근로자에게서 유산의 증거가 확인된 점 등을 산재 인정 배경으로 꼽았음.

-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월 화학약품을 취급하던 간호사의 자녀에게 발생한 선천성 뇌 기형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지만, 이는 제주의료원 간호사 4명의 자녀 질병을 산재로 인정한 2020년 대법원 판결을 감안해 유사한 사례를 질판위 판정 없이 인정한 것이었음.
- 근로복지공단은 "태아산재법 시행 이전에 태어난 자녀의 질병이 법의 소급적용을 받은 첫 사례"라며 "특히 질판위를 통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고 했음.

◈ 대법, 현대제철 '불법파견' 인정

- 3월 12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대제철 사내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161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 판결을 확정했음.
- 원고들은 현대제철과 도급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순천공장에서 연간 180만t의 냉연강판 등을 생산하는 일을 했음.
- 이들은 정규직이 하지 않는 크레인 운전, 기계·전기 정비업무 등의 업무를 맡았음. 이들은 현대제철의 결정과 지시를 받는 방식으로 일했고, 파견법이 제한한 사용기한 2년이 넘었다고 주장했음.
- 이들은 2011년 현대제철 소속 노동자임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음.
- 하청노동자들은 2005년 7월을 기점으로 이전에 입사한 109명, 이후에 입사한 52명으로 나눠서 소송을 제기했음.
- 1·2심 법원은 현대제철이 '전산관리시스템(MES)'으로 하청노동자에게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업무를 지휘하고 명령했다고 판단했음.
-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를 확정하면서 "(현대제철이)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인사, 근태상황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음.
- 2022년 7월 제철업종에선 처음으로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낸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바 있으나 현대제철 사내하청 근로자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 것은 처음임.

◈ 하도급 지급보증 안 한 건설사 38곳 1,788억 원 적발

- 3월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사 중 77곳과 상위 101~200위 기업 10곳을 대상으로 긴급점검한 결과, 38곳의 하도급계약 551건에서 지급보증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음.

- 건설업체 38곳에서 △담당자 과실 및 업무 미숙 △하도급대금 또는 공사기간 변경계약 체결 뒤 지급보증 미갱신 △발주자와 직불합의 미완료에도 직불합의 근거로 미보증 △공동도급현장 비주관사가 지급보증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 △건설사 자체 발주 공사 지급보증 미가입 사례 등이 드러났음.
- 이들 기업이 지급보증하지 않은 규모는 1,788억 원으로, 공정거래위는 이들이 지급보증에 신규 가입하라고 자진시정 조치했음.
- 공정거래위는 또 이들 가운데 긴급점검 뒤 적발돼 자진시정한 30곳에 대해서는 경고(벌점 0.5점) 조치했고, 조사개시일(1월 25일) 이전 시정한 업체 8곳에 대해서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에 따라 미처벌했음.
- 경고 조치를 받은 업체는 시공순위 20~40위권 8곳, 40~60위권 6곳, 60~80위권 7곳, 80~100위권 6곳, 100위 이상 3곳임.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른 의무로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수급사업자는 시공분 하도급대금을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음.
- 다단계 하도급 구조인 건설산업에서 만약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함.

◈ 경기도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4곳 추가

- 3월 12일 경기도는 "화성 · 남양주 · 파주 · 안산 등 4개 지역의 역 광장, 공영주차장 등 접근과 주차가 쉬운 곳을 대상으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장소를 고려 중"이라고 하였음.
- 현재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동노동자 쉼터 19곳을 운영 중이고 여기에 4곳을 추가하면 모두 23곳에 설치됨.
- 경기도는 "이동노동자는 대리운전이나 배달 · 돌봄 · 프리랜서 강사 등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라며 "이동이 잦은 업무 특성상 휴식 시간이 불규칙적이고 휴식 장소가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 쉼터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음.
- 이동노동자 쉼터는 '거점형 쉼터'와 '간이형 쉼터'로 구분됨. 거점형 쉼터는 사무실 형태로 휴식 공간과 상담 ·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간이형 쉼터는 컨테이너 형태로 설치 ·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음.
- 지난해 약 24만 5천 명이 경기도 19곳(거점 10곳 · 간이 9곳)의 쉼터를 이용했고 이 중 약 13만 7천 명의 이용자가 간이쉼터를 이용했음.

– 2024년 4월 기준 전국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는 79개임.

◈ 실근로시간 주 2시간 줄인 중소기업에 연 최대 1억 원 지원

– 3월 14일 고용노동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시 월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음.
– 사업주가 근로자 한 명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1년간 지원함.
– 사업장 근로자의 30%를 지원 인원으로 하되 한도는 최대 30명임.
– 그간 사업주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근로계약서 등을 변경해야 했음,
– 올해부터는 사업주 의지로 유연근무 활용, 불필요한 야근 근절, 자유로운 연차 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사업장 전체의 실근로시간을 줄인 경우에도 워라밸일자리장려금(실근로시간단축)을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계획 수립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매 3개월 단위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감소(제도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 등 요건을 갖춰야 함.

〈표 5〉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유형별 주요 내용 비교

	소정근로시간단축	실근로시간단축
지원요건	개인 단위 주 소정 근로시간 단축 (35시간 이상→15~30시간 이하)	사업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우선지원대상·중견기업
지원기간	1년	1년
지원액	① 단축 장려금(월 30만 원) ② 임금 감소액 보전(월 20만 원)	단축 장려금(월 30만 원)

자료 : 고용노동부.

◈ 대기업 장애인 고용컨설팅 52곳 → 300곳

– 3월 18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해 52개 대기업 대상으로 실시하던 맞춤형 고용컨설팅을 300개 기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음.
– 공단은 대기업 고용컨설팅을 2022년 시범 실시했음. 이듬해 대기업전담팀을 신설해 52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했고, 388명의 신규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했음.

- 공단은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서 가장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역인 '장애인 적합 직무 부족' '적합 인력 부족'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할 계획임.

◈ 주요 기업 38% 사무직군에 AI 도입

- 3월 21일 한국경총은 2022년 기준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과 주요 회원사를 상대로 '주요 기업 AI 도입 실태 및 인식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고 응답한 기업은 50곳이었음.
- AI를 사무직군에 도입했는지 묻는 질문에 38%가 "회사 차원에서 도입했다", "회사 차원의 도입은 없으나 직원들이 개별적으로 활용한다"라는 답변은 50%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12%는 "회사 차원의 활용을 금지했다"라고 답했음.
-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에 그 이유를 묻자 41.9%가 "정보 유출 우려", "준비기간 필요(29%)와 업무 특성상 필요하지 않다(16.1%)"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음.
- 향후 AI 도입 계획에 44%는 "향후에도 도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답했고 이는 AI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기업의 71%에 해당함.
- AI를 도입했거나 도입 예정인 기업 응답자의 56%는 "AI가 업무 소요시간을 줄였거나 줄일 것"이라고 답했고 AI가 일자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미칠 것이라는 답변은 17.9%로 나타났음.
-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답변은 7.1%에 그쳤고 75%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봤음.

◈ 챗지피티가 쓴 자소서, 기업 65.4% "불이익 줄 것"

- 3월 24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매출액 500대 기업(315곳 응답)을 대상으로 지난해 11~12월 진행한 '2023년 하반기 기업채용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음.
- 조사결과를 보면, 챗지피티를 활용한 자소서에 대한 인식을 물었더니 "독창성과 창의성이 없어서 부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이 64.1%로, "기술변화를 활용해 긍정적"이라고 답한 13.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고 채용에 영향이 없다고 답한 곳은 22.2%였음
- 기업들 73%는 자소서 작성 과정에 챗지피티를 사용하는지를 판별하지 않고 있었음. 활용이 확인되면, 해당 전형에서 감점(42.2%)하거나 불합격 처리(23.2%)하는 등 불이익을 줄 것이라는 기업이 '영향 없다'(34.6%)라고 한 기업보다 많았음.
- 기업들은 챗지피티로 인해 '자소서 선별 역량을 강화'(51.1%)하거나, '자소서 외 다른 전형이 강화'(41.0%)할 것이라고 답변했음.
- 채용방식으로 정기공채만 운영하는 기업은 단 1%에 불과할 정도로 수시채용이 보편화되

는 가운데, 채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전형은 서류(7.3%), 필기(0.6%)보다는 면접(92.1%)으로, 면접을 통해 직무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업이 채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은 직무 관련 일경험(35.6%), 직무역량(27.3%), 전공지식(22.5%) 순으로 나타났음.
- 기업에 도움이 되는 취업지원서비스 역시 일경험 기회 제공(76.2%)으로, 멘토링 등 취업특강(52.7%), 직무별 맞춤 교육훈련(51.4%) 등보다 높았음. 기업이 원하는 채용을 위한 '일경험'은 3~6개월짜리 장기인턴십(74.0%), 기업수행 프로젝트 참여(68.9%) 등으로 나타났음.

◈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68%, 1년에 연차 6개도 못 썼다

- 3월 24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13일 전국 19살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상시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67.9%가 지난해 사용한 연차휴가가 '6일 미만'이라고 답했음.
-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응답자만 봤을 때,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했다는 이들이 59.8%나 됐지만, 같은 조건의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은 21.1%만 연차를 6일 미만 썼다고 답했음.
- 지난해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한 이들은 37.8%였고, 6~8일 13.6%, 9~11일 17.3%, 12~14일 15%, 15일 이상 16.3%로 나타났음.
- 중소기업보다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정규직이, 비사무직보다 사무직, 저임금보다 고임금 노동자가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음.
- 전체 노동자의 65.5%가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가운데, 비상용직, 비사무직, 일반사원급,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임금이 150만 원 미만인 노동자들만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답변이 절반을 넘겼음.

◈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 15.6% "극단 선택 고민"

- 4월 7일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14~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음.
-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묻자 응답자 10명 중 3명(30.5%)이 "있다"라고 답했음.
- 괴롭힘 유형은 '모욕 · 명예훼손'(17.5%), '부당지시'(17.3%), '업무 외 강요'(16.5%), '폭행 · 폭언'(15.5%), '따돌림 · 차별'(13.1%) 순으로 나타났음.

- 직장 내 괴롭힘 경험자들의 46.6%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라고 하였고. 괴롭힘 인해 극단적 선택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15.6%가 “있다”라고 답했음.
- 괴롭힘을 당해도 여전히 개인이 감내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괴롭힘 경험자들의 대응방법은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가 57.7%로 가장 많았음.
- 회사를 그만뒀다고 답한 이들도 5명 중 1명(19.3%)이나 됐음.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47.1%가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음.
-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응답자들에게 신고 이후 회사의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물어보자 58%가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고 응답자 40%는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경험했다”고 답했음.

◈ 한국노총,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 · 사회정책 비표 · 평가 토론회’ 개최

- 3월 12일 한국노총은 ‘22대 총선 정당별 노동 · 사회정책 비표 ·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음,
- 각 정당에 요구한 노동사회정책 관련 공개질의 답변을 분석 · 평가한 결과를 공개하고, 정당 정책 담당자에게 직접 입장을 묻는 자리였음.
- 공개질의서에 답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녹색정의당 · 새로운미래 · 새진보연합 · 진보당임. 개혁신당은 답변하지 않았고, 조국혁신당에는 질의서가 전달되지 않았음.
- 한국노총은 공개질의서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사회연대 입법 법제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2 · 3조 개정 재추진 △공적 노령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 △산업별 · 업종별 교섭과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지역 중심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의료 불균형 해소 등 7대 핵심 정책요구를 전달했음.

〈표 6〉 한국노총 주요 총선요구안에 대한 각 정단 답변

(○ : 찬성, × : 반대, △ : 기타의견)

비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새진보연합	진보당
사회연대입법 법제화	○	미응답	○	△	△	○
노조법 2 · 3조 개정	○	×	○	○	○	○
주 4일제 도입 및 장시간 노동 근절	○	미응답	○	△ (주 4.5일제)	○	○
산별교섭을 통한 사회적 임금체계 구축	○	미응답	○	○	○	○
65세 정년연장 법제화	○	△ (단계적 연장)	○	○	○	○

자료 : 한국노총.

- 각 정당이 핵심으로 꼽는 총선 노동공약 3가지는 민주당은 노동시간 단축, 취약노동 보호, 노동안전보건체계 확충이라고 답했음.
- 녹색정의당은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 원상 복구, 생애주기 노동시간 단축을 제시했음.
- 새진보연합은 주 3일 휴식제 도입, 불안정·비정형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 돌봄노동 공공성 강화를 제안했음.
- 진보당은 임금삭감 없는 주 4일 근무제 실현,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1만 5천 원을 공약했음.
- 국민의힘은 질의 당시 "노동총선공약은 아직 검토 중으로 미확정"이라고 답변했고 새로운미래도 "공약을 제작 중"이라고 밝혔음.

〈표 7〉 각 정당의 노동정책 3대 핵심 공약

더불어민주당	주4일제 도입 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특고·플랫폼 등 차별 해소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구축
국민의힘	토론회 당시, 노동총선공약은 검토 중이라고 밝힘,		
녹색정의당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악의 원상 복구	생애주기 노동시간 단축
새로운미래	토론회 당시, 노동정책공약 제작 중이라고 밝힘		
새진보연합	주 3일제 휴식제 도입	불안정·비정형 노동의 노동권 보호	돌봄노동의 공공성 강화, 성평등 육아휴직
진보당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 실현	노조법 2·3조 개정 및 전국민노동법 추진	최저임금 1만 5천 원 시대

자료 : 한국노총.

- 이 외에도 민주노총은 6대 핵심 정책 요구안으로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주 4일제와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부자 증세와 복지재정 확대, △의료·돌봄·에너지의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를 선정했음.
- 4월 11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으로 선출되었음.

(조규준, 동향분석실 책임연구원)